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6.4.11(월) <b>조간 이후</b>	배포	
책임자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훈(02-2156-9830)	담당자	보험과 사무관 임 형 준(02-2156-9832)	
	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 김 동 성(02-3145-8220)		보험감리실 팀장 조 남 경(02-3145-8230)	

## 제 목 :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.

[금융위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 및 금감원 「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15 세부 실행방안]

- ▶ 자필서명 및 계약자 기재사항 축소
  - 서명횟수 축소(14회 → 10회), 덧쓰기 대폭 축소(30자 → 6자) 등
- ▶ 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(가입설계서 및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)
- ▶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(총납입보험료 규모,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)
  - 과도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

## 1. 추진배경

- 금융위원회의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 및 금융감독원의 「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15 「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」 추진계획('15.7.9. 브리핑)에 따라
  -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,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,
  -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,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

## 2.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, 덧쓰기 30자, 체크 39회 등\*의 확인을 하고 있음
  - \* A생명보험 변액보험을 사례로 조사한 것이며, 보험회사별·보험상품별로 가입서류의 종류 및 자필서명 등의 횟수는 다름
- (문제점) 그러나,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·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,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
  - (소비자) 보험가입시 과도한 자필서명, 덧쓰기 등으로 불편\*할 뿐만 아니라,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
    - \*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
  - 또한, 가입설계서,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 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
  - (보험회사) 과도한 서류 준비·보관 등에 따른 부담,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

### <보험가입시 제출서류 등>

구분	서류명 (8종)	서류의 내용 및 관련근거
제출 서류	□ 보험계약청약서(3)* (부표 : 계약전 알릴의무사항)	- 보험계약 청약의사 표시
	□ 비교안내확인서(3)	-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중요사항 비교·설명(보험업법)
	□ 적합성진단설문지(변액보험)(1)	- 계약자 투자성향 등 진단(보험업법)
	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(5) - 가입설계용, 계약체결용, 상품소개용	-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동의(신용정보법)**
	□ 고객신원정보확인서	- 자금세탁행위 방지(특정금융정보법)**
	□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(1)	- 미국인 계좌 확인(국제조세조정법)**
안내 서류	□ 상품설명서(1)	-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(보험업법)
	□ 가입설계서	- 보험상품 가입설계(보험업법)

\* 괄호( )안은 계약자의 자필서명 횟수

\*\*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등은 각각 관련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자필서명 등 불가피

### 3. 개선방안

#### < 기본 방향 >

- ◆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,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,
  -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
- ◆ 다만,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
- ➔ 이를 통해,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

#### 주요 개선방안

구 분	주요내용 요약
① 자필서명 등 축소	자필서명 : 14회 → 10회, 덧쓰기 : 30자 → 6자, 체크(✓) : 39회 → 26회
② 가입서류 간소화	가입설계서,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
③ 가입절차 간소화	소액·단기보험의 경우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통합, 온라인보험에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허용
④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	계약자가 납입할 총납입보험료 강조 및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,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강화 등

#### 1 자필서명 등 축소

- 청약서,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 (자필서명, 덧쓰기 및 체크(✓)) 횟수 축소
  - (자필서명)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\*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, 이를 1회로 축소
    - \* 청약의 의사 표시, 계약전알릴의무 확인 및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
  - 또한, 비교안내확인서\*에 자사(自社) 및 타사(他社)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, 이를 1회로 축소
    - \* 승환계약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기간,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비교·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(덧쓰기) 청약서內 '계약전알릴의무' 및 상품설명서\*\*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축소

\* 아래사항(질문 1~16번)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'보험가입이 거절' 될 수 있으며,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"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" 조항에 의해 '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' 될 수 있습니다. (→ 20자 덧쓰기 삭제)

\*\* FP '홍길동'으로부터 '상품설명서'를 전달받고 '설명'을 들었음 (10자 덧쓰기)  
→ FP 홍길동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전달받고 '설명듣고 이해하였음' (6자 덧쓰기)

- (체크) 상품설명서內 13개 '주요설명내용'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폐지('16.10.1.부터 시행)

-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(1회)으로 대체

#### 2 가입서류 간소화

-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,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및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 정비

- (가입설계서)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로서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, 상당부분\*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므로, 이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

\* 보험료, 해지환급금, 보장내용, 보험금 등

- (온라인 보험 비교안내 확인서)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므로 비교안내 확인 절차\* 폐지

\*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, 이의 확인을 위해 두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토록 정하고 있음

### 3 가입절차 간소화

- 소액·단기보험\*의 경우 '권유→청약'의 모집단계 구분\*\*이 모호·무의미하므로 보험안내서류를 통합(통합청약서)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

\* ①보험기간 1년 이하, ②월보험료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 60만원 이하로 보험기간 3년 이내, ③국내 또는 해외 여행중 위험보장 보험

\*\*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

- 권유단계 : 가입설계서, 상품설명서, 변액보험운용설명서
- 청약단계 : 보험계약청약서 부분, 보험약관

- 또한, 온라인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사확인 방법을 인정\*\*

\* 단, 본인 의사 전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

\*\*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(전자금융감독규정 §37)

### 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

-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

- (총납입보험료 강조) 기존의 저축성/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 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

\* (예시)

○○○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 
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·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, 납입기간 동안 약정한 보험료 총 4,800만원을 납입하는 상품이며,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시 사업비 공제 등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 가입시점의 계약조건[보험료(20만원)×납입주기(예:월납)×납입기간(예:20년)]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, 향후 특약의 갱신여부, 추가가입 또는 해지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총납입보험료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(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)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(보장성/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)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

-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 해소 및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

\* (예시)

보험상품 분류 및 가입상품의 종류(생명보험)

보험상품 분류		가입상품 종류 <sup>1)</sup>	실적배당 (변액)	갱신담보 포함여부 <sup>2)</sup>	비고 <sup>3)</sup>
저축성 보험	저축보험				
	연금저축				
	연금보험				
보장성 보험	종신보험	O	O	X	해지환급금 미보증
	정기보험				
	상해보험				
	질병보험				
	간병보험				
	어린이보험				
	실손의료보험				
기 타					

1) 가입상품 종류는 주계약 기준으로 판단 2) 해당상품에 갱신담보 포함시 'o'로 기재

3) 비고는 해당 상품의 특이사항(만기환급금 유무 등) 기재

- (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)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(피보험자)의 자필서명(서면에 의한 동의)이 필요

- 그러나,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\*할 수 있으나,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\*\*가 발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 강화

\* 이 경우에 보험계약은 해지되고,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됨

\*\* 부인(피보험자)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, 이혼 협의의 중 남편(계약자)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거부하여 불안해하는 민원 발생

- (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) 청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'계약전 알릴의무'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\*

\* '계약전 알릴의무'의 의의·효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, 일부 용어(투약, 혈압강하제, 각성제)에 대한 설명 추가 및 자필서명란 삭제(청약서 전체에 대한 자필서명 1회로 대체)

#### 4. 시행일 및 기대효과

- (시행일) '16.4.1.부터 시행하되,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'16.6.30.까지 유예 가능
- (기대효과) 과도한 서류·자필서명·덧쓰기 등이 축소·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,
  -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임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*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